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22 선고 2021가단1205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피고A

변론 종결2022. 3. 11.

판결 선고2022. 4. 22.

주 문

1. 가.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0. 10. 8.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20. 10. 15.자 접수 제124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 1) 원고는 2016. 4. 22.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외 D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7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보증기한을 2016. 4. 22.부터 2017. 4.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6. 4. 22.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소외 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을 252,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21. 4. 16.까지로 변경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소외 회사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2016. 5. 4. 이 사건 신용보증을 담보로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21. 2. 5.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2021. 3. 8. 대출원리금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2)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을 기한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 3) 원고는 2021. 7. 2. 소외 은행에 소외 회사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255,105,399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 1) B은 2020. 10. 8.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20. 10. 15.자 접수 제12495호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처분행위 당시 B의 재산상태

위와 같은 처분행위 당시 B의 적극재산은 167,871,6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를 포함한 총 6인에 대하여 합계 467,461,59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2016. 4. 22. 체결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에 기초한 것이므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소외 회사가 2021. 2. 5.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종전부터 인건비 등 사업자금 부족을 이유로 수시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직전에도 피고에게 자금을 요청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에 기초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소외 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그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선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정아

별지